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해양레저관광진흥법시행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이 제정(법률 제20178호, 2024. 1. 30. 공포, 2025. 1. 31. 시행)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해양레저관광의 정의(안 제2조)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의 외에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'을 유람선, 관광잠수함을 이용한 활동, 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말함

나.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(안 제3조)

해양레저관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세부 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낚시산업, 마리나산업, 수상·수중레저산업, 어촌관광활동 관련 산업, 크루즈산업, 해양치유산업 등 산업의 종류를 규정함

다.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(안 제4조)

- 1)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에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의 확산·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
 - 2)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 등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반영하는 경우,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함
- 라.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시행 등(안 제5조)

- 1)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·시행해야 함
 - 2)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마.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(안 제6조)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'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'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, 수상레저안전관리기본계획,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말함

바.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(안 제7조)

- 1)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에는 해양관광산업 사업체 현황, 사업체 고용현황, 사업 활동 현황, 해양관광 정책수요 등을 포함
- 2)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방법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조사하며,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

바.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(안 제8조)

- 1) 해양레저관광 분석에 필요한 기술수준과 전문성 보유, 박사급 전문인력 확보, 조사·연구·평가 등의 수행실적 보유,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, 인력, 재정능력 등을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
- 2)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,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,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

사.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(안 제9조)

- 1)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, 명칭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사업내용,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
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해양레저관광의 정의) 「해양레저관광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”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.

1. 유람선, 관광잠수함을 이용한 활동
2. 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, 해양박물관 및 사적지, 해양수족관, 해양자연공원을 방문하는 활동

제3조(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)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레저관광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낚시산업: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따른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관련 산업
2. 마리나산업: 「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, 보관·계류, 정비 등 관련 산업
3. 수상레저산업: 「수상레저안전법」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대여 및 수상레저활동 지원사업과 관련 산업
4. 수중레저산업: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

를」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장비 대여 및 교육 등과 관련 산업

5. 어촌관광활동 관련 산업: 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, 레저용 기반시설, 관광객 이용시설, 휴게시설 등 어촌 관광활동과 관련 산업

6. 크루즈산업: 「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제공 산업

7. 해양치유산업: 「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 기반 서비스 제공 산업

8. 「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」 제3조제3호사목에 따른 해양관광·레저와 관련된 산업. 다만, 제3조제1호부터 제7호에서 규정한 산업은 제외한다.

제4조(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(이하 ‘종합계획’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와 협의한 후 「해양수산물발전 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물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.

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·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2.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의 확산·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
4.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4조제3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

2.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

3. 그 밖에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④ 법 제4조제4항의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
제5조(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시행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,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)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계획”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.

1.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
2.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4조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기본계획
3. 「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

제7조(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 등) ①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해양관광산업 사업체 현황
2. 해양관광산업 사업체 고용현황
3. 해양관광산업 사업 활동 현황
4. 해양관광 정책 수요
5.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, 조사목적,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
③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방법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조사하며, 효율적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법

령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산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통계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.

제8조(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해양레저관광 분석에 필요한 기술수준과 전문성 보유
2. 해양레저관광 분석 관련 박사급 전문인력 확보
3. 해양레저관광 조사·연구·평가 등의 수행실적 보유
4.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, 인력, 재정능력
5.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·보급 관련 보안관리 계획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기관의 업무수행 능력, 전문인력 보유현황,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해야 한다.

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)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관

광 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자격·가입·탈퇴 및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6.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임원의 선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
8.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
9. 회계 및 자산관리
10.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